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2013년 4월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KOREA INDUSTRIAL WASTES TREATMENT MUTUAL-AID ASSOCIATION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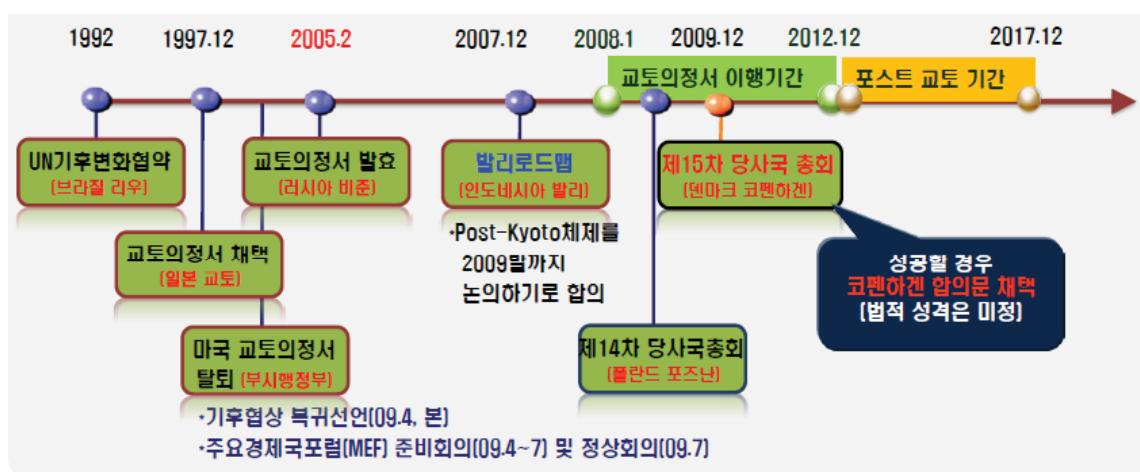
- I.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동향
- I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III.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IV.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및 특징
- V.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개요
- VI.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VII.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I .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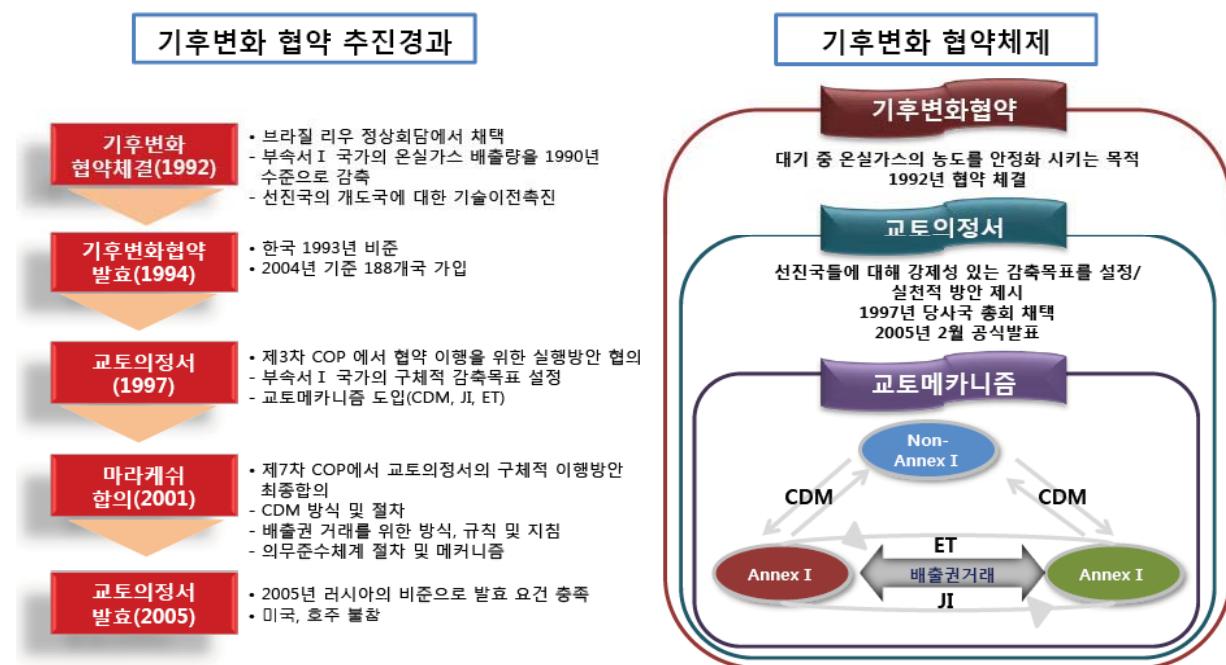


가. 기후변화 국제동향



- 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국가들은 감축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
- 제17차 당사국 총회(2010, 멕시코 칸쿤)에서도 교토의정서 이후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개도국에 대한 감축요구 증대

나. 교토프로토콜 체제의 성립



다. 우리나라 현황과 국제사회의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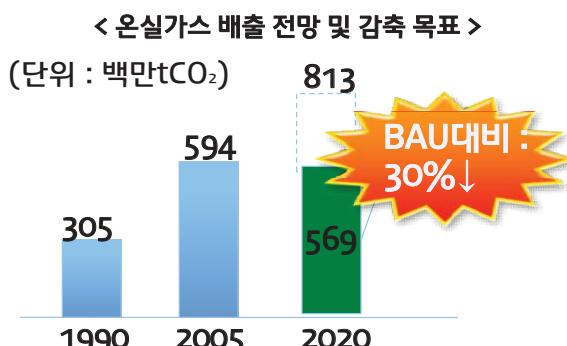
라. 국제환경과 국내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수립



마. 우리나라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 확정 ('09.11)

※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BAU 대비 15~30% 감축)한 감축범위의 최고수준임



주요 감축수단으로는
그린홈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그린카(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보급,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도입 등

정부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규제/인센티브)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 추진 ('10~)



II.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요

❖ 저탄소녹색성장의 목적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본을 조성하고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

❖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
- **에너지목표관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 추진
- 관리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
- 정부는 온실가스 관련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 시장기능을 활용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III.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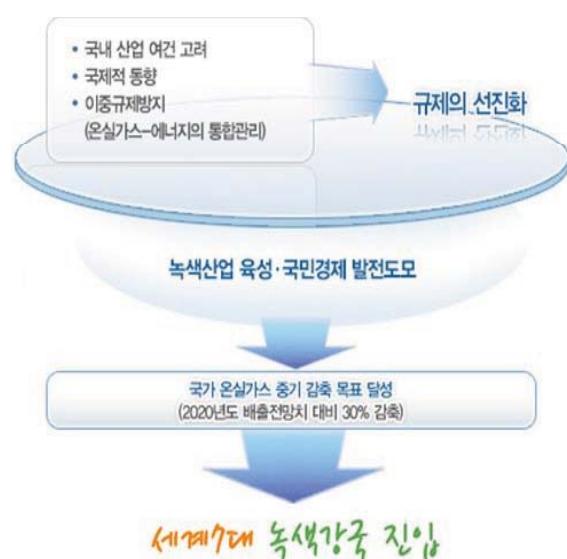
가. 목표관리제 개념 및 추진경위

※ 목표관리제의 정의

대규모 사업장(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 목표관리제 추진 목적



나. 목표관리제 프로세스

* 목표관리제 부처별 역할

◎ 총괄기관 : 환경부

- 목표관리에 대한 종합적 기준·절차 및 지침 등 마련
- 부문별 관장기관 사무에 대한 점검·평가
-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 부문별 관장기관



* 목표관리제 프로세스



- 농업·축산분야 : 농림수산식품부
- 산업·발전 분야 : 지식경제부
- 폐기물 분야 : 환경부
- 건물·교통 분야 : 국토해양부

다. 관리업체 선정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현황

관리업체 수 (A+C)	대상 사업장 수 (B+C)	업체단위 관리업체(A)		사업장단위 관리업체(C)
		업체 내 사업장(B)		
470	1,570	146	1,246	324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470개 지정 (2010. 09. 29)
- 부문별로 산업·발전 374개, 건물·교통 46개, 농업·축산 27개, 폐기물 23개 업체 지정
- 국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

총괄기관 : 환경부

- 목표관리에 대한 종합적 기준, 절차 및 지침 등 마련
- 부문별 관장기관 사무에 대한 점검 및 평가(중대 문제시 공동 실태조사)
-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라. 관리업체 선정 기준

▪ 관리업체 지정기준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분야별 관리업체 수

구분	관리업체 수		대상 사업장 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농업·축산	27	5.7	68	4.3	2,238	0.5	36,312	0.6
산업	338	71.9	784	49.9	214,310	48.4	2,770,899	49.5
발전	36	7.7	140	8.9	212,513	48.0	2,664,582	47.6
폐기물	23	4.9	331	21.1	7,133	1.6	24,581	0.4
건물·교통	46	9.8	247	15.7	6,397	1.4	96,217	1.7
합 계	470	100.0	1,570	100.0	442,591	100.0	5,592,591	100.0

마.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현황

일련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일련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1	광주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업체	12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업체
2	대구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업체	13	창원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업체
3	대전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업체	14	(주)코엔텍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울산광역시 남구 풍남동	사업장
4	부산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업체	15	KG에코서비스코리아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시흥시 정왕동	사업장
5	부천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부천시 원미구 중동	업체	16	광명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광명시 가학동	사업장
6	서울특별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업체	17	비노텍㈜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안산시 단원구 월시동	사업장
7	성남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업체	18	성림유화㈜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사업장
8	수원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업체	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사업장
9	수자원공사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업체	20	안산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사업장
10	울산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업체	21	달서전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사업장
11	인천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업체	22	서부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사업장
12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업체	23	신천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사업장

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구성

- 명세서는 크게 아래의 5가지 Sector로 구성되어 있음

1. 관리업체 총괄정보/ 사업장 일반정보

- 일반정보, 사업장 목록,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사업장 조직경계 등

2. 사업장 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설정보, 사용량 정보, 배출구(굴뚝) 정보, 방지시설 정보

3. 사업장 배출량 현황(총괄)/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 온실가스배출량(총괄), 바이오매스 사용 배출량, 산정등급(Tier) 변동현황, 배출시설 변동여부

4.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연료연소 분야, 공정배출 및 폐기율 분야)

5. 에너지판매실적/온실가스감축,흡수,제거실적/오존대체물질사용 실적

- 에너지판매 실적/온실가스 감축, 흡수, 제거 실적/오존대체물질 사용 실적

사.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명세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사업장)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농수산식품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명세서 작성 및 제출

관리업체는 배출량 산정결과를 지정된 명세서 양식에 따라 지정된 검증 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관장 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리업체 총괄 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총괄)
-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에너지 판매실적
- 온실가스 감축, 흡수, 제거 실적
- 온실가스 사용실적 (오존대체물질 포함)

참고 -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아.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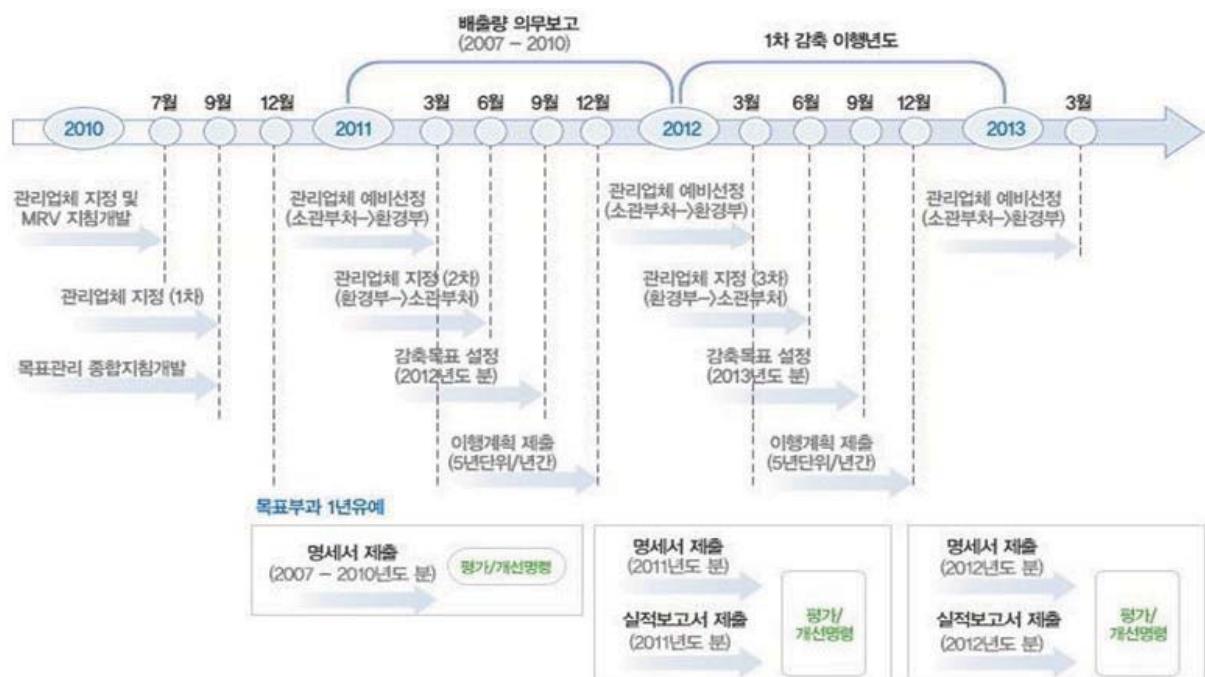


이행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및 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
- 온실가스 감축 · 흡수 · 제거 실적



자. 목표관리제 업무 흐름도



차.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시간경과	과태료 금액
관리업체가(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관리업체가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관리업체가 이행계획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1차 위반 나.2차 위반 다.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관리업체가 검증에 따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관리업체가 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1차 위반 나.2차 위반 다.3차 이상 위반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IV.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특징



가. 배출권 거래제 개념

배출권 거래제 개념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시장유인 제도

그림1. 행정명령과 규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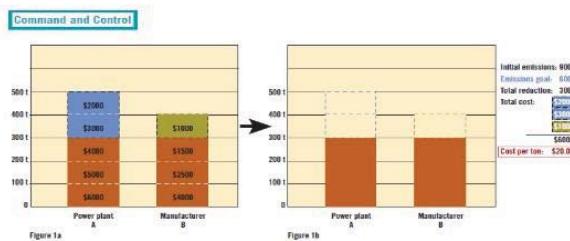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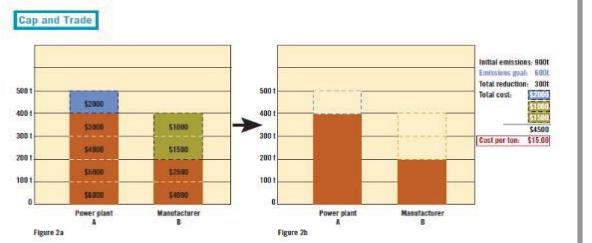


그림2. 배출량 총량제한 방식



-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기반의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시장친화적인 유연한 감축수단**

- 배출권 이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 기업은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업 내 한계 저감비용을 산정하여 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판매/매입)를 통해 자신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확보**



나. 한계 저감비용이란?

한계저감비용(MAC, Marginal Abatement Cost)

-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당(톤)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업은 자기 사업장의 한계저감비용을 산정하여 시장의 배출권 가격과 비교하여 **배출권 거래 여부를 선택하게 됨**
- 사업장의 한계저감비용 > 배출권의 시장가격 : **배출권 매입**
- 사업장의 한계저감비용 < 배출권의 시장가격 : 자체 감축을 통한 **배출권 확보 및 판매**
- 사업장의 한계저감비용 = 배출권의 시장가격 : 거래 자체가 형성 안됨

※ 한계저감비용은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각기 상이하므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자연히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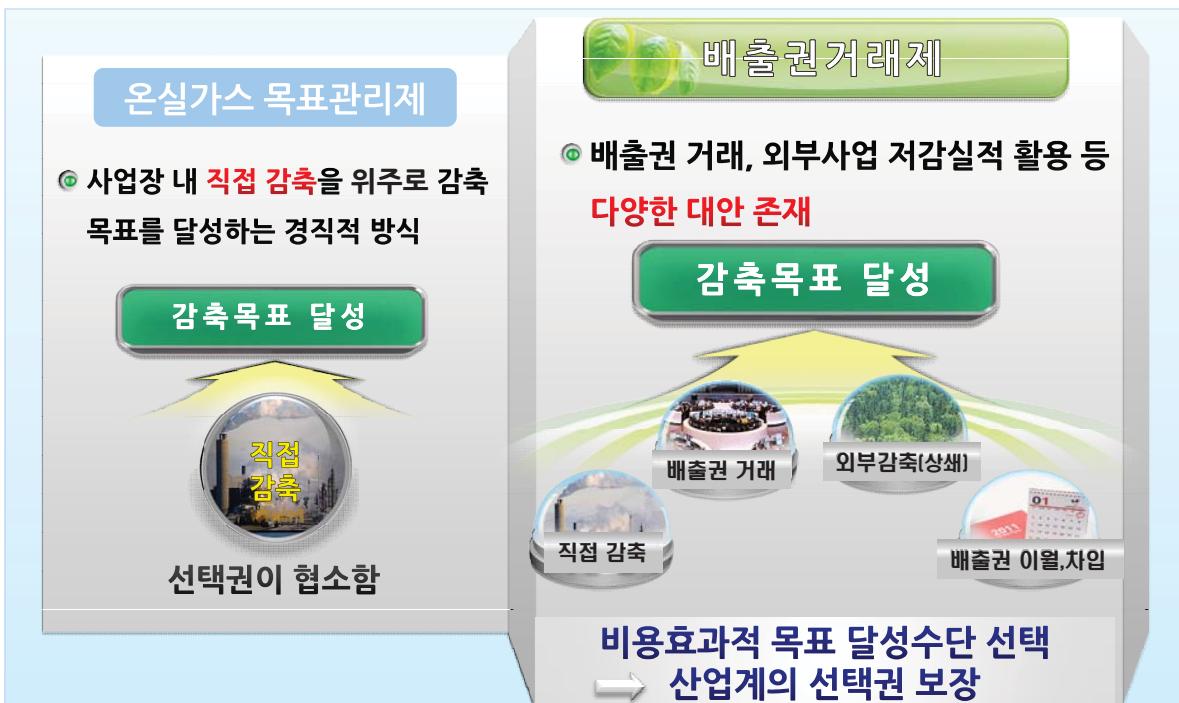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참여방법

기업의 한계저감 비용 산정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과 비교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매입/판매)

다. 현행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비교





V. 국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개요

가. 배출권 거래제 법률 주요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12. 5. 14)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정부는 계획기간 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대상 부문 · 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1차 : '15년 ~ '17년, 2차 : '18년 ~ '20년, 3차 부터 5년 단위

적용 대상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

- 연 25,000톤 CO₂ 이상 배출 사업장, 연 125,000톤 CO₂ 이상 배출 업체(의무 적용)
-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배출권의 거래

-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 방법으로 거래 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 등록부에 거래계정을 미리 등록

제도 시행 시기

- 2015년 1월 1일부터 제도 본격 시행
 - * 기업 대응 및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고려
- 법률 및 시행령 시행일 : 2012.11.15.

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요

- 법률 : 8장 43조 부칙 3조로 구성
- 시행령 : 7장 49조 부칙 3조로 구성

기관별 업무분장

- 할당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 할당계획 등 주요 사항 심의
- 주무관청(환경부) :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할당, 배출권 발행, 할당의 조정·취소, 배출량 인증, 상쇄 운영, 검증기관 및 거래소 지정·관리 등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구축·운영,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제도의 운영 요소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할당위원회 / 할당 결정 심의 위원회 /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구축·운영
- 할당대상업체 지정, 배출권 할당, 조기감축실적 인정, 할당량 조정·취소, 검증기관 및 배출권거래소 관리, 배출권 거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및 상쇄 인증 관련 고시

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서의 관계 부처 별 역할

정책적 사항

-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심의
(부문 업종별 할당량, 업체 할당기준)
 - 할당위원회 운영

집행적 사항

- 단일 주무관청(환경부장관)
-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
 - 업체별 할당량 결정
 - 배출권등록부, 상쇄등록부 관리
 - 배출량 인증, 거래소 관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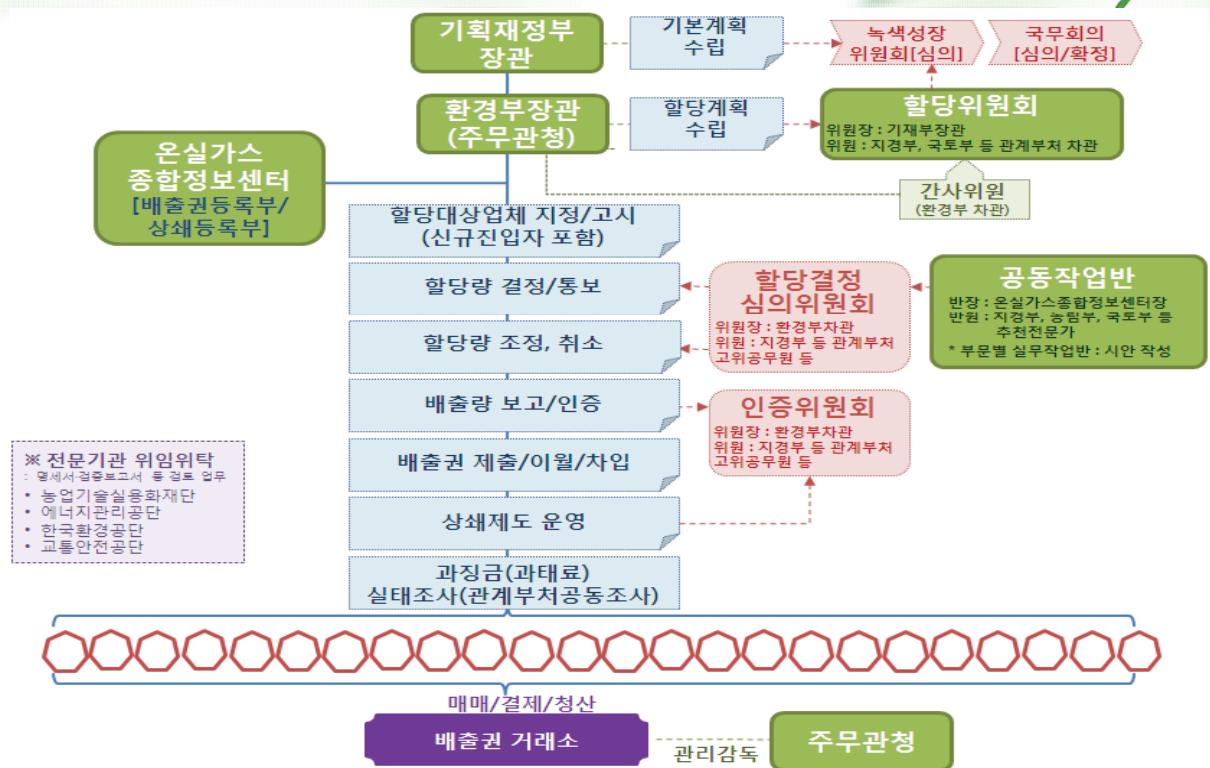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관련 정책결정 시에

(할당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인증위원회 등) 주도적으로 참여 가능

→ 주요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 각 부문·업종의 특성 반영



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거버넌스}





VI.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요

❖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 기록하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 대상 온실가스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6대 온실가스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및 CFCs 계열 물질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

-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따른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규명
- 비용 효율적인 저감기회 확인
-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배출권 거래제도 등 향후 정부의 프로그램에 적극 대응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례

분야	업체명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에너지. 산업공정	LG 화학, SK 에너지, 포스코, P&G, 현대중공업
건설. 교통	삼성물산, 대한통운
폐기물(매립지 등)	사례 없음

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원칙

▶ 산정원칙 (온실가스에너지 운영등에 관한 지침(안) 제5장 37조)

적절성(Relevance)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완전성(Completeness)	정해진 범위내의 모든 배출활동/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산정 제외시 사유 제시)
일관성(Consistency)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배출량의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 범위, 산정방법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기술해야 함
정확성(Accuracy)	과대 또는 과소산정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산정 및 보고
투명성(Transparency)	산정방법론, 산정시 활용된 관련 자료 및 그 출처와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

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절차



라. 산정 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원

고정연소배출

고체연료연소, 기체연료연소, 액체연료연소

이동연소배출

항공, 도로수송, 철도수송, 선박

탈루성배출

석탄의 채굴 및 처리, 원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 (2013년 1월1일 적용)

생산공정배출

시멘트 생산, 석회 생산,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암모니아 생산, 질산 생산, 아디프산 생산, 카바이드 생산, 이산화티탄 생산, 소다회 생산, 석유정제활동, 석유화학제품 생산, 불소화합물 생산, 철강 생산, 합금철 생산, 아연 생산, 전자산업,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폐기물처리

고형폐기물의 매립,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하·폐수 처리 및 배출, 폐기물의 소각

간접온실가스배출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사용, 외부에서 공급된 열의 사용

VII.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함과 아울러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 조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2011, 11, 07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산업계에서는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배출국들의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한 도입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안 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확정해서 2012년 05월 0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05월14일 공포되었다.

법률에 따르면 도입 시기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간 늦추었으며, 배출권의 할당에 대해서도 당초 유상할당 비율을 10%였으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동향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페널티의 경우 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배출권 평균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추었으며, 그리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한 이중규제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동 법률을 보면 EU-ETS, JVETS 등 선진국에서 사전 경험한 좋은 사

례들을 잘 반영하여 제정 되었다고 보며, 특히,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2) 주요내용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제5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부문별·업종별·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함.

(3)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제6조 및 제7조)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4)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및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제8조부터 제10조까지)

① 이 법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와 할당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 정함.

② 이 법을 적용받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에 대한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5) 배출권의 할당(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① 주무관청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함.

③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등록부의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계정에 그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무관청이 배출권을 할당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 없이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함.

(6)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제16조 및 제17조)

①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등의 경우 주무관청은 직권으로 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 할당 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은 주무관청이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7) 배출권의 거래(제4장)

①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하도록 함.

②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하되, 외국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 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④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8)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 검증 및 인증(제24조 및 제25조)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가 종료하면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외부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함.

(9) 배출권의 제출, 이월 · 차입 및 상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①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②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 등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③ 할당 대상업체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절차를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10) 과징금의 부과(제33조)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1) 금융 · 세제상의 지원(제35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 · 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2) 1차 계획기간에 대한 특례 등(부칙 제2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차 계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 중에 할당되는 배출권 총 수의 95퍼센트 이상은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함.